

#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해설

박 필 수  
우리 협회 고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·공포됨에 따라 건설업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개정이유와 개정 전·후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달라진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.

- \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·공포 : 1995. 10. 19 대통령령 제14,787호
- \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·공포 : 1995. 11. 23 노동부령 제103호

## 1. 산업재해발생 보고의 의무화(규칙 제4조)

### ■ 개정이유

- 개정전 시행규칙 제125조는 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하였으나, 미보고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.
- 따라서 현행법 제10조(보고의 의무)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보고요구가 없어도 보고토록 함으로써
  - － 산업재해시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보험 또는 자체공상 등 사업주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 사법조치가 가능토록 한다(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).
- 또한,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재해발생원인 등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.
  - －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는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으로, 사실상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.

# 안전해설 1-1

## ■ 개정내용

개 정 전	개 정 후
<p>〈제125조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질병자가 발생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·제출(요양신청서 제출시는 조사표 제출 생략 가능)</li> <li>○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시 48시간 이내에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, 조치 및 전망, 기타 중요사항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</li> </ul>	<p>〈제4조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질병자가 발생할 때에는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·제출(요양신청서 제출시는 조사표 제출 생략 가능)</li> <li>○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시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24시간 이내에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, 조치 및 전망, 기타 중요사항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</li> <li>○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함(건설업은 확인생략 가능)</li> <li>○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요양신청서 사본 송부요청시 협조</li> </ul>

## 2. 양성교육이수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범위 확대(영 제12조, 영 별표 3, 별표4)

### ■ 개정사유

- 양성교육기간을 연장한 것은 영세소규모사업장의 유자격자 선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
  - 건설업의 경우 현장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아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.

### ■ 개정내용

개 정 전	개 정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양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– 1995. 12. 31까지</li> </ul> </li> <li>○ 양성교육 이수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– 공업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관리감독자로서 일정기간(대학 1년, 전문대학 3년, 고교 5년) 이상 업무 담당자</li> </ul> </li> <li>○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양성교육 이수 후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–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양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– 1998. 12. 31까지(3년 연장)</li> </ul> </li> <li>○ 양성교육 이수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– 건설업의 경우는 “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”가 아닌 “시공실무경력”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로 확대</li> </ul> </li> <li>○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양성교육 이수 후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업장범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–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,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현장의 안전관리자(1인은 건설안전기사이어야 함)</li> <li>– 건설업 중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현장으로서 하수급인의 사업장</li> </ul> </li> </ul>

### 3.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변경(영 제12조 및 영 별표3)

#### ■ 개정사유

- 공사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공사초기와 말기에는 공사준비 또는 마무리 등으로 인력이 적게 투입됨에도 안전관리자는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는 바
  -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초기와 말기(총30/100)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1인을 선임토록 하되 공사규모가 큰 점을 감안, 건설안전기사 1, 2급으로 한다.
  - 발전시설, 지하철 등 대규모현장에서 공사초기부터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경우는(초기와 말기에도 상시 300인 이상) 현행 규정대로 선임토록 한 것이다.
  - 그러나, 실제 투입된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초기와 말기에도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고
  - 상시근로자 200인 추가시마다 안전관리자 1인씩을 추가 선임하여야 한다.

#### ■ 개정내용

개 정 전	개 정 후
○ 건설업의 안전관리자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을 선임하되</li> <li>- 공사금액 5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200인이 추가될 때마다 안전관리자 1인씩 추가</li> </ul>	○ 안전관리자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할 건설공사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 초기의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인 이상을 선임토록 함</li> <li>※ 이 경우 1인은 건설안전기사 1, 2급 자격자로 함</li> <li>-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함</li> </ul>

### 4.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기준 변경(영 제23조)

#### ■ 개정사유

- 건설업은 기후·작업공정 등에 따라 근로인원이 일정치 않으며 하수급인이 각각의 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등 일일 근로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
  - 특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으로 인한 사법처리 등 조치시에는 공사시작부터 출역인원을 전부 확인하여야 하는 등 지도감독에 애로가 뒤따르고 있다.
- 따라서, 상시근로자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에 있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을 공사금액 기준으로 하였다.

#### ■ 개정내용

개 정 전	개 정 후
○ 사업을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건설업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시근로자(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함) 50인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</li> </ul>	○ 건설업은 상시근로자에 관계없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급인 및 하수급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</li> <li>-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</li> </ul>

# 안전해설 1-1

## 5. 안전보건관계자 선임보고의 간소화(규칙 제14조 제2항)

### ■ 개정이유

- 건설업의 특성에 맞추어 굴착깊이 등 7종의 공사개요를 기입토록 함으로써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이를 통해 공사착공 이후라도 제출을 독려하고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.
- 첨부서류 중 대행기관 위탁증명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류를 삭제한 것은 대행기관 지정·관리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대행계약 체결 및 해지시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있으며
  - － 교육이수 증명서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자 명단을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으로부터 동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.

### ■ 개정내용

개 정 전	개 정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조업과 건설업의 보고서식이 동일함(별지 제1호 서식)</li> <li>○ 보고서 첨부서류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자격증 사본</li> <li>－ 대행기관에 위탁 증명서류</li> <li>－ 교육이수 증명서류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조업과 건설업의 보고서식 분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제조업 : 별지 제1호의2(1)서식</li> <li>－ 건설업 : 별지 제1호의2(2)서식</li> </ul> </li> <li>○ 보고서 첨부서류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자격증 사본만 첨부</li> </ul> </li> </ul>

## 6.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업장 명시(규칙 제32조)

### ■ 개정사유

- 고시 제95-5호 『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』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범위를 그대로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법적거를 명확히 하여
  - － 중·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되
  - ※ 전담기술지도(4천만원~20억원), 정기기술지도(20억원~100억원)
  - － 3개월미만 공사, 도시지방공사 등 현실적으로 전문기관의 기술지도가 어려운 점을 감안, 이러한 건설공사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 ■ 개정내용

개 정 전	개 정 후
〈신 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업주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공사금액으로 4천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으로 하고</li> <li>－ 공사기간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토록 함</li> </ul> </li> </ul>

## 7. 안전보건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조정(규칙 제33조, 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)

### ■ 개정사유

- 교육시간을 단축한 것을 교육시간 과중으로 생산활동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조정하였으며
- 교육내용을 보완한 것은
  - － 근로자는 물론 모든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부터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
  - － 안전관리자 및 대행기관 종사자가 건설업의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보완한 것이다.

### ■ 개정내용

개 정 전	개 정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시간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연간 24시간</li> </ul> </li> <li>○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건설업 이외의 종사 근로자는 8시간 이상</li> <li>－ 건설업 종사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함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시간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단축(별표 8)</li> </ul> </li> <li>○ 채용시와 작업내용 변경시를 구분하여 채용시는 종전과 동일하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작업내용 변경시는 건설업 이외 종사 근로자는 2시간 이상</li> <li>－ 건설업 종사자는 1시간 이상으로 단축(별표 8)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서 근로자 정기교육·관리감독자 정기교육·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(별표 8의2)</li> </ul> </li> <li>○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대행기관 종사자는 신규 및 보수교육시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을 교</li> </ul> </li> </ul>
〈신 설〉	

## 8.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기 등 조정(규칙 제37조, 제39조, 제45조의 2)

### ■ 개정사유

-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인 공단에서 다양한 과정보로 작성한 교육교재에 대해 노동부에서 모두 심사하여 승인하기는 사실상 곤란하여
  - －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.
- 직무교육 시기를 한정된 것은 선임후 1년간은 직무교육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
  - － 보수교육의 경우도 교육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상자 파악 등 교육관리를 개선하기 위함이다.

# 안전해설 1-1

## ■ 개정내용

개 정 전	개 정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리책임자 등의 법정직무 교육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임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고</li> <li>-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</li> </ul> </li> <li>○ 법정교육 또는 근로자 교육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교재는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단이 작성한 교재 사용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리책임자 등의 법정교육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규교육은 선임 후 3월 이내(의사는 1년) 받고</li> <li>-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 3월 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받도록 하며</li> </ul> </li> <li>○ 법정교육 또는 근로자 교육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교재는 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</li> </ul> </li> </ul>

### [별지 제1호의 2(2) 서식]

관리책임자등 선임등 보고서(건설업)						
본 사	① 사업장명				② 대 표 자	
	③ 소 재 지	(전화번호)				
현 장  개 요	④ 현 장 명				⑤ 발주자 또는 도급인	
	⑥ 소 재 지	(전화번호)				
	⑦ 공사기간				⑧ 공 사 금 액	
	⑨ 상시근로자수				⑩ 굴착깊이(M)	
	⑪ 건축물 공작물의 최대높이(M)				⑫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(M)	
	⑬ 잠함공사의 개 이지압력(kg/cm)				⑭ 터 널 길 이(M)	
⑮ 제방높이(M)				⑯ 크레인 최대인양하중(T)		
내 역	⑰ 성 명	⑱ 자	격	⑲ 선임 등 년월일	⑳ 직위 및 직책	㉑ 전담 겸임 구분
구 분						
⑳ 안전보건관리책임자						
㉑ 안전보건총괄책임자						
㉒ 안 전 관 리 자						
<p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고 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지방노동청(사무소)장 귀하</p>						
<p>첨부서류 1. 자격증 사본(안전관리자의 경우에 한합니다) ※ ⑩~⑯항은 원수급인인 경우에 한합니다.</p>						